

장레지도사 교육기관 [] 휴업 신고서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교육기관명			신고번호	
소재지				
휴업·폐업 예정일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폐업일	년 월 일		

휴업·폐업 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장레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레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